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월세 거주, 19세~39세 이하 청년

※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 대상,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 연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인 자,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동작, 관악 등) 수혜 중인 자는 지원 불가

<신청유형>

-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청년 신청인만 등록되어 있는 1인 가구

- 한부모가족 :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필수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청년 1인 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필수 제출)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 배우자 모두 청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은 무자녀 부부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입주하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

※ 모든 신청 유형은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12개월간 지급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5. 6.(수) 10:00 ~ 5. 19.(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 15,000명
 - 청년 1인 가구 : 12,000명
 - 전세사기피해자, 한부모가족 : 각각 1,000명
 -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각각 500명
 - ※ 전세사기피해자 등 신설 신청 유형 미달 시 청년 1인 가구에서 추가 선정(1→4구간 순)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선정 및 지급

- 선정방법 : 서류·자격 심사 '적격자' 대상, 지원 구간별 전산 추첨
 -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구간별 추첨
 - 전세사기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안심주택(민간) 거주자 : 유형별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25일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8월(7월분), 10월(8월, 9월분), 12월(10월, 11월분) 지급 이후,
잔여 7개월분은 '27년에 격월 지급 예정 (※ 지급 일정 변동 가능)
 -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2. 신청 자격요건

□ 신청 유형

-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청년 신청인만 등록되어 있는 1인 가구
- 한부모가족 :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필수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청년 1인 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필수 제출)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 배우자 모두 청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무자녀 부부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된 경우에 한함(예비 신혼부부 신청 불가)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 입주하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인 가구
 - ※ 모든 신청유형은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신혼부부 유형에서 배우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고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되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만 신청 가능함.
부부 공동임차인인 경우라도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
 -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연령)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6. 1. 1. ~ 2007. 12. 31.)

-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청년 연령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인이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 고려하여 최대 42세까지 연령 상한 연장하여 신청 가능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예시)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40세(1985.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군 복무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41세(1984.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군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42세(1983.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 (거주)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5.12.기준)은 4.5% 적용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보증금 금액 × 4.5% ÷ 12개월

예시1)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87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7.5만원(2천만원 × 4.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5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5만원(4천만원 × 4.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경우, 임차보증금·월세액을 1인당 분담액 기준으로 인정
-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임차인이 동시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혼부부인 신청인 및 배우자가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심사 탈락)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건강보험상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상 월 평균 소득이 '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를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공고일 기준,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소득 금액 기준으로 확인함

※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이 현재와 현저히 다를 시, 이의신청 기간 중 보완 가능(FAQ 참조)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국토부 청년월세 신청 가능

<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중위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중위 120%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3	10,267,142	11,418,180
중위 150%	3,846,357	6,298,938	8,038,554	9,742,107	11,335,079	12,833,928	14,272,72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사람
 - ※ 신청일 전 지원 종료 시 신청 가능
 - ※ '26년 서울시 청년월세에 선정되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 당해 국토부 청년월세에 최종 선정될 경우, 기 지급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전액 환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 신청유형을 달리하여도, 신청자 본인의 과거 선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등 포함)
 - ※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소유권 확인될 시 선정 불가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신청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자치구(은평, 광진 등)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사람,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 ※ 신청 전 타사업 수급 등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예시 : 4월까지 수급, 5월 미수급일 경우 신청 가능)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배우자'이거나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필수서류(4종)]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자격요건 심사 탈락(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 불가능)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 ~ ㉢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고시텔,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 ㉡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계약서 상 소재지가 동일해야함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아래 ㉢, ㉣ 모두 제출

㉢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4) 기숙사의 경우 기관 날인된 입실확인서 제출

②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6.2~4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이체 일자(연월일),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명시될 경우, 마스킹 없이 전체 표기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서명 필수

※ 비동의 시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별도 제출

※ 동의서 :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추가서류] ※ 해당하는 신청인만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한부모가족 유형’ 으로 신청 시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신청일 이전 결정되어야 함
 -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으로 신청 시 제출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신청인의 군 복무내역을 증빙하고 연령 상한을 최대 3살까지 연장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15,000명
- 선정방법 : 서류·자격 심사 ‘적격자’ 대상, 지원 구분별 전산 추첨
 - 전세사기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안심주택(민간) 거주자 : 유형별 추첨
 - ※ 유형별로 모집인원 미달 시 ‘청년 1인 가구’ 에서 추가 선정(1→4구간 순)
 -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구간별 추첨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비율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48% 초과 ~ 120% 이하	3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3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2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4.5%) 및 월세액 합계 90만원 이하	48% 초과 ~ 150% 이하	15%

- ※ 구간별 선정 인원이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4.5%) 합산

5.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6년 7월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6. 이의신청

-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및 소명 자료 제출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 를 결정·통보한 날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부터 10일 이내(1건만 신청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

※ 필수 서류(4종)를 미제출하여 서류 심사 탈락한 경우 이의신청 시 자료 보완 불가능

7.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6년 7월 말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 기간 내 미개설 시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 ※ 청년드림통장 기 보유자는 정상 거래 가능 여부를 신한은행에서 확인 필요
(사용 불가 계좌일 경우 선정 취소됨)

8.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외 타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해도 동일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시 청년수당,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동시 수혜
 - ※ 유사사업 동시 수혜의 경우, 동시 수혜 발생 월부터 지급 중지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월세 주거비 지원 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 중지됨
 - ※ 지급 중지 이후 재개시, 재신청은 불가하며, 잔여 지원금은 소멸됨
-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변경 신고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월은 종전 계약 내용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내용은 익월부터 적용

9.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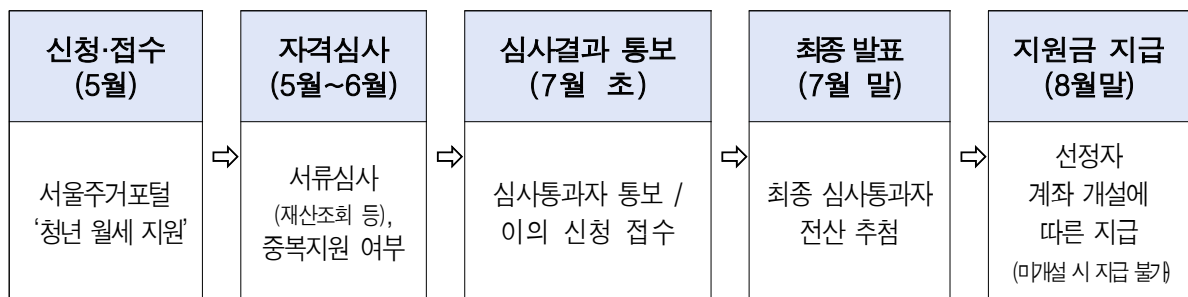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착오 또는 부정한 신청의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FAQ)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폭주로 인한 상담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2부제(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는 짝수일) 문의를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는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1833-2030)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정확한 정보(자료) 없이 신청자 질의에 따라 상담을 진행 하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 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절차 >



* 세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개요(요약) >

지원대상 : 19 ~ 39세 청년 ※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 연장

구 분	1인 가구	전세사기피해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지 대 원 상	주민등록상 청년 1인 가구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지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소한 청년 1인 가구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청년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무자녀 부부	주민등록상 청년 1인 가구이며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거주자	
요 건 인 원	거주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서울 월세 거주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4.5%) 및 월세액 합계 90만원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재산	(신청자 기준)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사기표준액 2,500만원 미만				
인 원	12,000명	1,000명	1,000명	500명	500명	
제 서 출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3개월(’26.2~4월)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필요시) 방착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3개월(’26.2~4월)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 전세사기피해지등 결정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필요시) 방착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3개월(’26.2~4월)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필요시) 방착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3개월(’26.2~4월)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필요시) 방착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3개월(’26.2~4월)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필요시) 방착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지 제 원 외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유사사업 동시 수급자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별도 제출

지 원 내 용 : 월 최대 20만원 이내 임차료 지원 (12개월) ※ 생애 1회

신 청 기 간 : '26. 5. 6.(수) 10:00 ~ 5. 19.(화) 18:00 (14일간)

신 청 방 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접수

선정자 발표 : '26년 7월 말 예정



서울주거포털